해상에서의 조난선박 항공기의 구조 및 인명 구원 협조에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및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정부간의 협 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 및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 정부는 그들의 해변에 린접한 극동제해와 태평양의 해상에서 선박 및 항공기들이 조난당하게 될때 그선박과 항공기의 국적여하를 불관하고 그조난당한 인명의 구원과 선박및 항공기들에게의 신속 실효적 구조를위한 유리한 조건들의 조상과 협조의 설정을 목적으로 다음과같이 협정한다

제 1 조

해상에서의 선박 (항공기)들과 그의 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구조와 구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들의 해상구원대 관하에있는 령해과 수역에의하여 실현된다

어느한 국가의 해상구원대든지 해상에서의 선박 (항공기)의 조난에관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는 가장 합목적적인 구조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만약에 이경우에 조난장소가 어느한 체약국의 해안근방일 경우에는 그조난 통보를 접수한 해상구원대는 조난장소 가까이에 있는 국가의 해상구원대와 반드시 련계를 가져야하며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3 체약국 해상구원대와도 련계를 가져야한다 해상구조 작업에관한 활동은 서로합의하여 제휴한다

다른 체약국에 속하여있는 선박 (항공기)이 조난 당하였을 경우에는 그통보를 접수한 한쪽 해상구원대는 선박 (항공기)소속국 해상구원대와는 합의하여야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 령내에서의 선박 (항공기) 그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구원구조 작업은 해당국가의 법령에의하여 실행한다

제 3 조

조난 신호는 국제조난 신호수발신 규정에 적응하여 500키로싸이크르 (600메터)의 주파수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 해상구원대 무선국들이 담당한다

본협정 적용에서의 련락설정용 호출신호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구원대를 위하여서는 XST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상구원대를 위하여서는 AMS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련맹 해상구원대를 위하여서는 URH 이다

XST 와 URH 간의 무선련락은 URH 를 위하여서는 주간 12105 키로 싸이크르 야간 5450키로 싸이크르를 XST 를위해서는 8546 키로 싸이크르 또는 야간 6369키로 싸이크르의 주파수로서 설정된다

AMS 와 URH 간의 무선련락은 상호호출용 주파수는 500키로 싸이크르이며 호출후의 작업용 주파수는 4175키로 싸이크르이다

XST 와 AMS 간의 무선련락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상구원대간의 직접적 련락이 설정될때까지 URH 를 경유하기로 한다

제 4 조

구원작업 수행에있어서 그해상 구원대의 선박은 XST AMS 및 URH 무선국을 경유하여 자기들 호상간 및 조난선박 (항공기)들과 간의 무선련락을 유지하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500키로 싸이크로 (600메터)의 주파수로써 직접무선련락을 유지한다

련락은 국제신호 규칙에의하여 무선기로써 유지하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로어 혹 영어로써 공개적으로 유지한다

제 5 조

구조를 위하여 자기의 구원수단들을 제일먼저 파견하였거나 혹은 구원작업에 제일먼저 착수한 해상구원대는 만일 이것이 조난선박 (항공기)과 그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다른 체약국들의 해상구원대를 공동구조에로 초청 할수있다

이러한 초청을받은 해상구원대는 자기의 가능성에 따라서 구원수단들을 지적된 지점으로 출발시킨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및 쏘베트사회주의

공최국련맹 해상구원대 성원 및 수단들의 온갖 노력은 조난선박 (항공기)과 그승무원 승객 및 화물의 신속실효적 구조에 경주되여야한다

만약에 선박 (항공기) 조난의 환경 및 성질이 승무원 승객들의 생명에 위험을 줄때에는 위선먼저 인명부터 구원한다

제 7 조

제일먼저 조난선박 (항공기)에 도착하여 그선장으로부터 구조에대한 동의를받은 구원자는 자기의 결심으로서 작업을 지도하는 주 구원자로 출현한다

주 구원자의 초청에의하여 조난현장에 후에도착한 타국의 해상구원대 구원수단은 부 구원자로서 공동구조에 인입되며 주 구원자의 지도와 책임하에서 구원작업에 착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들과 조난선박 (항공기) 선장간의 합의에의하여 조난현장에 후에 도착한 다른구원자에게 주 구원자의 권리를 양도할수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이미 체결된 구원계약에 리서하고 구원자들과 조난선박 선장이 구성한다

협정 참가국들이 선박 (항공기)을 공동구원하는 모든 경우에는 주 구원자의 권리는 조난선박 (항공기)의 소속국가 구원자에게 양도된다

제 8 조

조난선박 (항공기) 구조작업에서의 구원자들의 참가정도는 구원 작업이끝난후에 주 구원자 (혹은 그의 위임하에 부 구원

자)와 피 구원선박 (항공기) 선장간에 작성되는 악뜨에 기록된다

제 9 조

구원 및 구조로부터 생기는 구원자와 피구원 재산관리자간의 결산과 관련된 문제는 유관 당사국들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된다 이를 위하여 주 구원자는 조난현장에 도착하자 곧 조난선박 (항공기) 선장과 구원계약을 체결한다

필요할시는 계약서에 구조의 보수에관한 사전을 해결할 재판소의명칭 및 장소를 지적할수 있다

제 10 조

당사국들은 자기의 구원선박 및 해당기관 들에게 본협정의 제규정 실행과 관련한 상세한 지시를 주어야한다

제 11 조

본 협정의 제규정은 1910년9월23일에 부뤼ㅅ세르에서 체결된 해상에서의 구조 및 구원에관한 약간의 규칙통합을위한 국제협약 및 1948년6월10일에 론돈에서 체결된 해상에서의 인명 보고에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동기로 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본협정은 3년기한으로 체결되며 1957년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만약에 협정에 조인한 어느한 당사국도 본협정 유효기한 만료 6개월전에 그의 폐기에 대하여 선고 하지않는다면 본협정은 다음 1년간 계속 유효하며 그리고 어느한 당사국도 그의 유효기한 만료 6개월전에 그의 폐기통고를 하지않은 경우에는 매번 다음 1년간 계속 유효하다

본협정은 1956년7월3일 중어 조선어 로어로 각각 3통식 작성되였는바 세원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张志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쏘베트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